 환경부 <small>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 나은 정부	보 도 자 료		
	보도일시	2019년 6월 7일 조간 (6. 6. 12:00 이후)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	담당 부서	환경부 기후경제과	장이재 과장 / 이보형 사무관
			044-201-6580 / 6593
배포일시	2019. 6. 5. / 총 5매		



온실가스 배출권 잉여분의 이월 기준 변경

- ◇ 환경부,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순매도량 기준으로 차년도 이월량 제한
- ◇ 이월·차입 신청기간 3개월 연장, 배출권거래에 충분한 시간 부여

- 환경부(장관 조명래)는 6월 7일부터 ‘제2차 계획기간(2018~2020)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’을 변경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이월을 제한한다.
 - 이번 변경사항은 지난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할당위원회(위원장 기재부장관)의 서면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.
- 이에 따라,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2018년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3배, 2019년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잉여배출권을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.
 - 다만 배출권 소량 보유업체*는 잉여배출권의 이월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.
 - * (2018년) 업체 7.5만, 사업장 1.5만, (2019년) 업체 5만, 사업장 1만
 - 환경부는 업종별 간담회(5월 13~15일)와 공청회(5월 21일)에서 제기된 배출권 잉여업체의 의견을 수용하여, 이번 할당계획 변경 전 업체의 구매물량에 대해 모두 이월을 허용하고, 배출권의 장외거래도 매수·매도량으로 취급하기로 했다.

- 아울러 올해의 경우 배출권 이월·차입 신청기간을 당초 6월 10일에서 9월 1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여 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변경된 규칙에 따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.
-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배출권등록부시스템(etr.gir.go.kr) 내의 배출권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현재까지의 매수·매도량을 확인할 수 있다.
- 또한,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(K-ETS) 내 거래 정보게시판(M501)을 활용하여 배출권의 구입·판매 의사를 등록하고, 다른 업체가 등록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.
-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“배출권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최소한의 거래유동성 확보는 필요하다”라며, “향후,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, 파생상품 도입 검토 등으로 배출권시장의 거래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- 붙임 1. 2018년 배출권의 이월·차입 및 제출안내.
 2. 질의응답. 끝.

 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보형 사무관(☎ 044-201-659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1. '18년도 배출권 이월·차입

- 업체 이월·차입 신청 기간
 - ' 19.8.30(금) ~ 9.11(수) 13시 ~ 17시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- 이월·차입 신청 승인 : ' 19.9.16(월) ~ 9.24(화)

2. '18년도 배출권 이월·차입의 제한

- (이월) 다음의 기준(i ~ iii) 중 큰 값의 범위에서 이월을 승인하고,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로 이월
 - i) 제2차 계획기간 제1차 이행연도 배출권 순매도량*의 3배
 - * 제2차 계획기간 제1차 이행연도의 배출권(KAU) 및 상쇄배출권(KCU)에 대한 해당 업체의 이행연도 내(해당업체에 제1차 이행연도 배출권이 할당된 날부터 제2차 이행연도로의 이월을 신청한 전날까지) '매도량 - 매수량(유상할당 경매물량은 제외)'
 - * 단, ① 할당계획 변경안 확정(6.7) 이전의 매수량은 제한 없이 이월 가능, ② 순매도량 계산 시 할당계획 변경안 확정(6.7) 이전의 매수량은 산정에서 제외
 - ※ 배출권거래법 제21조에 따라 배출권의 매수·매도에 따른 배출권의 이전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때 효력 발생
 - ii) 기준연도 연평균 배출량이 12.5만 tCO₂-eq 이상인 업체로서 지정된 업체의 경우 7.5만 KAU,
 - iii) 2.5만 tCO₂-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로서 지정된 업체의 경우 1만 5천 KAU
- (차입) 해당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의 15% 이내에서 차입을 승인하고, 제2차 계획기간 제2차 이행연도 배출권에서 차감

3. '18년도 배출권 매수·매도량 확인방법

- ETRS 시스템 > 배출권거래 > 거래내역 조회 > 2차 계획기간 1차 이행연도(2018) 선택 > 거래유형 전체 선택 > 조회

4. '18년도 배출권의 제출

- 업체 배출권 제출 신고기간
 - '19.8.30(금) ~ 9.30(월) 13시 ~ 17시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- 배출권 제출신고 승인 : '19.8.30(목) ~ '19.9.30(월)

5. 이의신청 업체의 배출권 이월·차입 및 배출권 제출

- 업체 이의신청 기간: '19.5.31(금) ~ 7.1(월)
- 이의신청 업체 배출권 이월·차입 신청 기간
 - '19.8.30(금) ~ 9.11(수) 13시 ~ 17시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- 이의신청 업체의 배출권 제출 신고기간
 - '19.8.30(금) ~ 9.30(월) 13시 ~ 17시(주말 및 공휴일 제외)

6. 문의사항

- 이월·차입 기준에 관한 사항
 - 환경부 기후경제과(044-201-6593)
 - 한국환경공단 배출권정책지원부(032-590-5615)
- 배출권 협의거래 지원에 관한 사항
 - 한국거래소 거래정보 게시관(M501) 활용관련 문의(051-662-2825)
 - 배출권시장협의회(070-5180-1233)
- 그 외 사항: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콜센터(1577-8065)

1. 배출권 거래제도란?

-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내에서 배출행위를 허용하고, 각 기업체는 감축여력에 따라 감축 또는 매매를 결정
- 관련 근거 법령 제정('12.11) 후 배출권거래제* 도입·시행('15.1~)
 - * 제1차 계획기간('15~'17), 제2차 계획기간('18~'20), 제3차 계획기간('21~'25)
 - * 제2차 계획기간 제1차 이행연도('18), 제2차 이행연도('19), 제3차 이행연도('20)



2.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 절차는?

-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*를 기반으로 매 계획기간 전 배출량 할당
 - * 2030년까지 국가 BAU(Business as usual: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)대비 37% 감축
- 각 업체는 매 이행연도마다 배출활동을 하는 한편, 감축·거래 활동을 통해 부족한 배출권을 확보
 - 환경부는 이행연도 다음해 3월까지 기업으로부터 배출량을 제출받고, 이를 검토하여 5월말 확정 배출량 통보, 기업은 6월까지 배출권 정산
- 배출권 정산 시, 기업은 다음연도 배출권을 차입(최대15%)하거나, 이월이 가능하나, 계획기간 간 배출권 이월은 일부 제한*
 - * 1기 → 2기: 연평균할당량의 10% + 2만톤, 2기 → 3기: 기간 내 연평균 순매도량